

수원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3나100978 판결 [건물명도등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3나100978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3. 10. 25 선고 2022가단547227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종중

피고, 항소인 1. C

2. D

변론종결 2024. 11. 20.

판결선고 2024. 12. 18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. 10. 25. 선고 2022가단547227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E, F(분할 후 G), H(분할 후 I) 토지 위의 제1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51, 52, 53, 54, 55, 56,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건물 및 제1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57, 58, 59, 60, 61, 62, 63, 5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건물에서 퇴거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박평수, 판사 진현지, 판사 김혜진